

<2024년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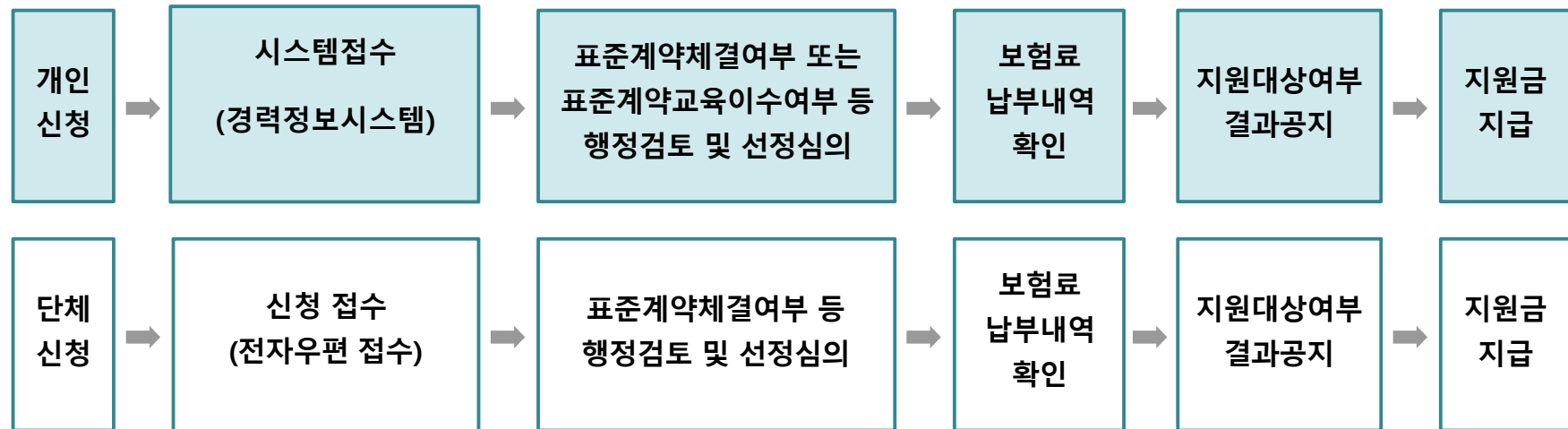
제출서류 발급가이드

(개인신청 예술인/단체신청 사업자)

목 차

1. 지원절차
2. 지원대상
3.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예술활동증명, 특례신청)
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방법
5. 제출서류
6. 서류발급방법 (개인신청자)
7. 서류발급방법 (단체신청자)

1. 지원절차



* 신청 접수 이후 심의 및 지원까지 2~4개월 소요

2. 지원대상

■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가능

■ 문화예술사업자

- 예술인과 표준(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예술인을 고용한 후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예술인과 함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문화예술사업자

3.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 1) 예술활동증명
- 2) 표준계약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3. 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2024년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특례를 신청 완료한 예술인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 신청 시 표준계약서 첨부 필수)

* 단, 예술활동증명 특례는 표준계약 교육이수 예술인 지원에는 적용되지 않음

3.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3-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 회원가입/로그인

→ 예술활동증명 신청하기 → 기본정보입력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Kawfartist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HOME, 로그아웃, 이용약관, and SITEMAP. Below this is a secondary menu with categories like 경력지원, 복지지원, 구인/구직, 알림·상담, 예술교류정보, 뉴스레터, 나의활동정보, and 온라인지원관리.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three columns. The left column features a section titled '01 예술인 포트폴리오 등록 관리' with a sub-header '내 이력을 등록하고 포트폴리오로 관리해 보세요.' and a description about applying for an activity certificate. The middle column has a section '02 복지지원서비스' with a sub-header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예술인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예술인의 질병 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d three icons representing support services. The right column contains a '뉴스레터' section with a blue button labeled '예술활동증명 신청하기' which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red arrow. Below it is a '처음오셨나요?' section with a '자세히 보기' button, and a '1:1문의하기' section with a '1:1문의하기' button.

3-1)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 예술활동증명 방법 중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등 선택

→ 최근 1~5년 내 공개발표 예술활동 자료 또는 예술활동 수입내역 및 예술활동 자료 첨부 → 저장

* 예술분야별 예술활동증명 기준 확인 필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참고 www.kawfartist.kr)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등 일반 예술활동증명

- 제출서류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1~5년으로 설정됩니다. 유효기간 동안 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가능하며 예술인패스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신청 후 완료까지 8주 내외 소요됩니다.

작품명, 발표일시, 신청자명 등이 확인되는 예술활동자료 또는 수입내역 확인 가능한 계약서 및 통장사본 등 첨부



3-2) 표준계약체결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 예술활동증명 방법 중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선택

→ (계약기간이 2023.7.~2024.06 포함된) 표준계약서 첨부 → 저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3~2024년에 작성한 연봉계약서와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 첨부 필수



02. 예술활동증명 내용

예술활동증명 방법* (택 1)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 예술활동 수입
- 기준 외 활동의 경우
 - 경력단절예술인
 - 원로예술인
 - 기타사유 및 특수한 작업방식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는 사회보험료 지원 및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 가능하며 그 외 사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작품 발표일(기간)*: [] ~ []

작품명*: []
예 : 작품명, 전시명, 공연명

주최/제작*: []

신청자의 역할*: []
예 : 작가, 배우, 안무, 조명감독 등

첨부파일: [] [] [] []

이전단계로 이동 | 다음단계로 이동 | **저장**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 '서면계약서' 자료만으로 한시적인 예술활동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으며,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특례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신청 후 완료까지 1~2주 소요됩니다.

표준 계약서 반드시 첨부
※ 주의사항

- 전체문서(1쪽부터 끝쪽까지) 첨부
- PDF 또는 사진/이미지 파일로 첨부



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방법

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방법

1) 신청접수방법

- (개인신청 예술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이용
- (단체신청 사업자) 전자우편(support@kawf.kr) 이용

2)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 ~ 2024년 8월 31일 토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3668-0200

4) 홈페이지 참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kr

5. 제출서류

5. 제출서류

제출서류	예술인(개인) 신청		단체(회사) 신청
	프리랜서 예술인	근로자인 예술인	
		국민연금 지역·임의가입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공통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단체신청 시 근로자인 예술인 개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소득유형 전체 선택하여 발급) ↔ 발급 불가시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계약(교육)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계약서및계약이행 확인자료(입금내역등) · 표준계약교육이수증 (교육참석확인증 해당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근로)계약서 · 월별 급여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근로)계약서 · 월별 급여명세서(급여대장) ※ 급여명세서 엑셀파일로 제출
국민연금 납부서류	-		· 월별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보험료 환급용 서류	· 통장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사본(회사, 예술인) · 사업자등록증

5. 제출서류 참고 (계약체결 프리랜서 예술인)

- 계약이행 확인자료

1. 수입내역

- **예술활동 수입내역 자료**
 - 예금주명, 지급처, 지급일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은행직인 필수)**

2. 예술활동자료

* 수입내역이 없는 프리랜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심의를 통해 예술활동 자료를 계약이행자료로 인정

- **예술활동 확인 가능한 자료**
 작품명, 발표일시, 신청자명과
 역할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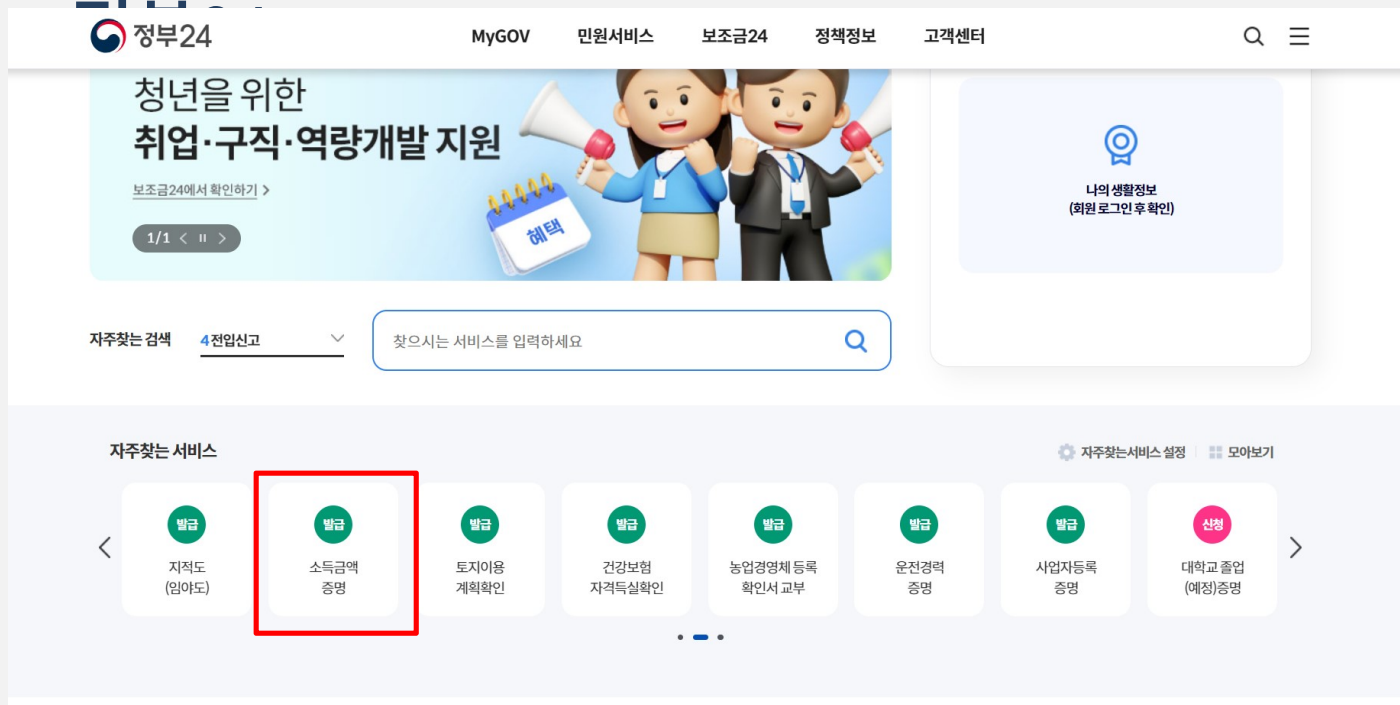
- **작품(비평)집, 문예지**
 - 표지/목차와 작품수록면/발행 정보면
- **전시** - 도록 또는 리플릿 표지/내지
- **공연** - 포스터 또는 출연계약서
- **방송, 광고, 영화**
 - 출연확인서 또는 계약서와 소득자료

6. [개인신청 예술인]

서류발급방법 안내

- 소득금액증명원(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원 제출)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에서 소득금액증명원 클릭



신청내용

성명 * [선택] * 표시: 필수 항목(영문·국문)
 생년월일 * [년] [월] / [일]
 전화번호 * [입력] * 표시: 필수 항목(영문·국문)
 용도 * [기타] * 표시: 필수 항목(영문·국문)

수령방법 선택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표시: 필수 항목(영문·국문)
 제출처 [입력]

발급내용

주인등록번호 공개여부 * 공개 비공개 * 표시: 필수 항목(영문·국문)
 주소 공개여부 * 공개 비공개 * 표시: 필수 항목(영문·국문)
 소득별소득 공개여부 * 공개 비공개 * 표시: 필수 항목(영문·국문)
 일용근로소득 공천장수취무자 * 모두표기 미표기 * 표시: 필수 항목(영문·국문)
 두표기여부 * [입력]
 증명보고자하는기간 * [년] - [년]

신청일 2024년 02월 06일

전화번호: 본인 핸드폰, 집 전화번호 입력
용도: 기타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공개 및 모두표기로 체크

* 발급 시기가 24년 5월 이전일 경우
: 2022년~2022년
* 발급 시기가 24년 5월 이후일 경우
: 2023년~2023년



◆ 소득금액증명원

※ 서류 출력본 예시

(1 / 1)

발급번호		소득금액증명 (2022년 귀속)					처리기간	
							즉 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단위: 원)								
구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총결정세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합계	
수입금액								
소득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과세 소득금액은 이월결산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한 분리과세 소득(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계약금외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합계액 총 결정세액: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합계액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에서 종합과세된 소득이 있는 경우 미기재] (단위: 원)								
구분	소득발생처		지급받은 총액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비고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2022. ~ 2022.)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6일 이세무서장 (인)								
○ 용어 설명								
구분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소득금액				
이자소득	지급받은 이자소득 총액			지급받은 이자소득(필요경비 없음)				
배당소득	지급받은 배당소득 총액			지급받은 배당소득(필요경비 없음)				
사업소득	지급받은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				
근로소득	·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급여액 ·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				
연금소득	공적기관에서 지급받은 총연금액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				
기타소득	지급받은 기타소득 총액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종교인소득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총액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접수번호	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100730291024	증명발급자	인원봉사실	강선미	02-3499-0228				
	세제담당자	소득세과						

· 본 증명의 위·변조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 민원증명(증명발급) 민원증명 원본확인, 에서 발급번호로 확인, 또는 문서 확인의 바코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문서를 위·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청 예술인 유의사항

- 계약서 및 납부서류는 지원 받을 기간이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하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예시1) 2024년 1월~6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경우,
1월~6월 전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서 제출 필요
(2월~4월 계약서 제출 시, 2~4월에 납부한 보험료만 지원함)

(예시2) 2024년 1월~3월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경우,
해당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완납 및 지원 신청 기간에 대한 서류 제출 필요

- 국민연금 납부서류는 재단에서 국민연금공단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미제출
- 미납 또는 부분납부 했을 경우 해당 월은 미지원

(예시3) 계약서, 계약이행자료 등 모든 서류는 **전체 페이지 제출 필요**
(전체서류 중 일부 페이지만 제출하거나 글자식별이 불가할 경우 인정 불가)

7. [단체신청 사업자]

서류발급방법 안내

- 국민연금 납부서류 :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 소득금액증명원 :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개별발급

◆ 단체신청 사업자 유의사항

- 증명서류는 지원받을 기간이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하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예시1) 2024년 1월~6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경우,
1월~6월 전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서 제출 필요
(2월~4월 계약서 제출 시, 2~4월에 납부한 보험료만 지원함)

(예시2) 계약서, 급여명세서(급여대장), 국민연금납부서류 등 모든 서류는
전체 페이지 제출 필요
(전체서류 중 일부 페이지만 제출하거나 글자식별이 불가할 경우 인정 불가)

◆ 국민연금 납부서류 :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 서류 출력본 예시

- 서류발급방법 '서비스 가이드' 참고 (minwon.nps.or.kr)

NPS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2012년 11월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발급번호	20121206-*****	발급일자	2012-12-06	검증번호	Y754
------	----------------	------	------------	------	------

■ 사업장 기본사항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칭	

■ 연금보험료 징수내역

해당년월	납부할 금액(계)	납부한 금액(계)	납부하지 않은 금액(계)	보험료지정금	정산구분
당월인원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계	0원
분할분리차수	연체금	연체금	연체금	전월분	0원
2012년 11월	239,020원	0원	239,020원	미월분	0원
3명	239,020원	0원	239,020원	전월차감	0원
미반영	0원	0원	0원	0원	0원

■ 당월분 연금보험료 대상자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준소득월액(원)	연금보험료(원)	근로자기여금(원)	사용자부담금(원)
1	홍길동	123456-1*****	835,000	75,140	0	0
2	홍길동	123456-1*****	750,000	67,500	33,750	33,750
3	홍길동	123456-1*****	1,071,000	96,380	48,190	48,190

NPS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를 * 처리하였습니다.
 ※ 본 확인서는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기여금과 부담금 표현이 소득공제용 증명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2012년 11월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내역을 증명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업장서비스 → 사업장보험료 결정내역 조회/증명

NPS 전자민원서비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국민연금 민원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

① **개인 공인인증 >**

① 사업장 공인인증 >

전자민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모바일로 내보내기



NPS 전자민원서비스

개인서비스 사업장서비스 서비스가이드 마이페이지

사업장서비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조회 사업장보험료 결정내역 조회/증명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조회/증명 사업장 가입자명부 조회/증명 사업장 가입자 명부 조회/증명 보험료 부과내역 증명서 발급

사업장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전체 조회 증명서 등 발급 신고/신청

증명서 등 발급

② **사업장보험료 결정내역 조회/증명**

사업장의 보험료 결정내역증명서를 발급...

<p>가입증명서(사업장)</p> <p>사업장의 가입이력 등이 포함된 가입증...</p>	<p>사업장 가입자 증명서(개인별)</p> <p>가입종인 또는 퇴사한 직원의 가입증명...</p>	<p>사업장 가입자명부 조회/증명</p> <p>가입종인 또는 퇴사한 직원의 사업장 ...</p>	<p>사업장보험료 결정내역 조회/증명</p> <p>사업장의 보험료 결정내역증명서를 발급...</p>
<p>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 조회/증명</p> <p>사업장의 월별, 연도별 보험료 납부확...</p>	<p>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개인별)</p> <p>사업장가입자의 개인별 연금산정용 가입...</p>	<p>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전체/익일발급)</p> <p>사업장가입자 전체의 연금산정용 가입내...</p>	<p>사용자부담금 납부확인서</p> <p>사업장의 사용자부담금 납부확인서를 발...</p>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원]

※ 서류 출력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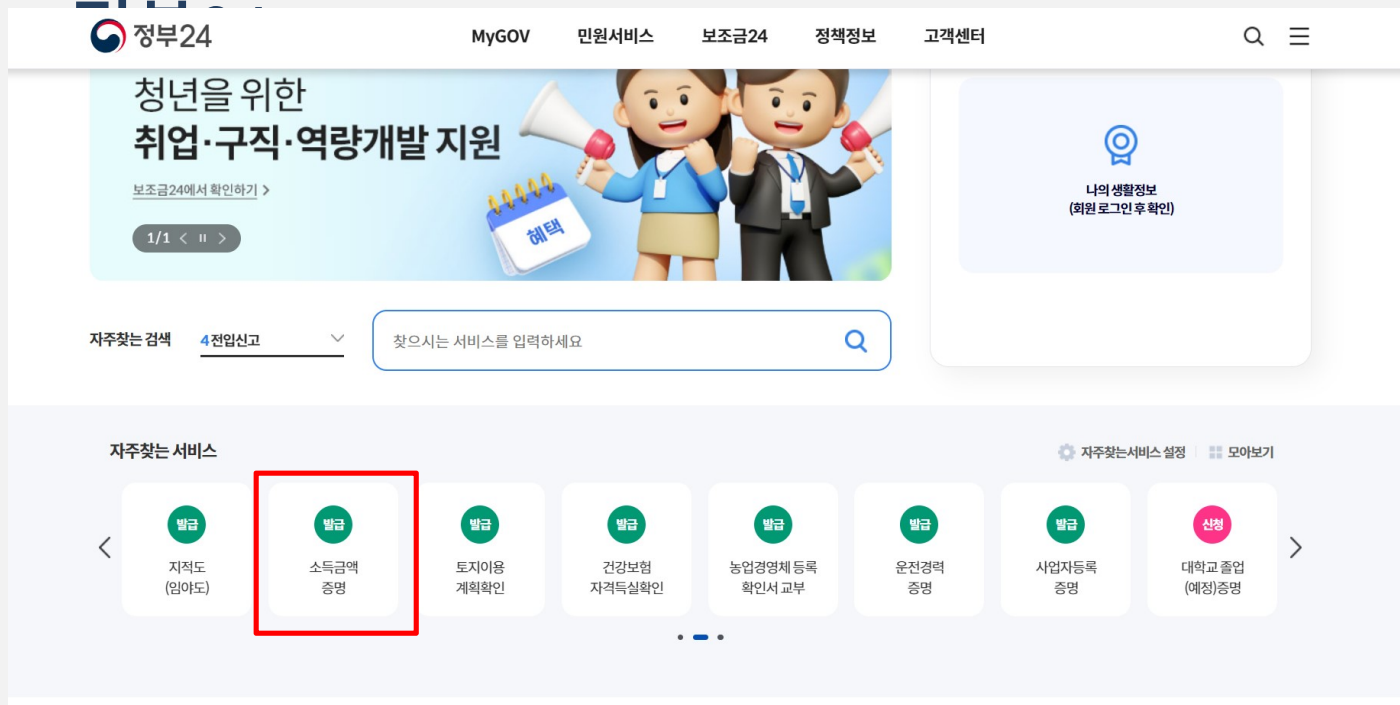
(1 / 1)

발급번호	소득금액증명 (2022년 귀속)						처리기간	즉 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단위: 원)									
구 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총 결정세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합계		
수입금액									
소득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과세 소득금액은 이월결산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한 분리과세 소득(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합계액 • 총 결정세액: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합계액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에서 종합과세한 소득이 있는 경우 미기재] (단위: 원)									
구 분	소득발생처		지급받은 총액	소득금액	총 결정세액	비고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2022. ~ 2022.)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6일 세무서장 (인)									
◇ 용어 설명									
구 분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소득금액				
이 자 소 득	지급받은 이자소득 총액				지급받은 이자소득(필요경비 없음)				
배 당 소 득	지급받은 배당소득 총액				지급받은 배당소득(필요경비 없음)				
사 업 소 득	지급받은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				
근 로 소 득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급여액 ·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				
연 금 소 득	공적기금에서 지급받은 총연금액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				
기 타 소 득	지급받은 기타소득 총액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총 고 인 소 득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총액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접수번호	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100730291024	증명발급과	원원봉사실	김선미	02-3499-0228					
	세척담당자	소득세과	김선미	02-3499-0383					

본 증명의 위·변조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 민원증명(증명발급) 민원증명 원본확인, 에서 발급번호로 확인, 또는 문서 허단의 바코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문서를 위·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에서 소득금액증명원 클릭



감사합니다😊
